

의안번호	2214973
의 퇴 인	이정문의원
회 답 일	2025.12.22.
추계번호	25D674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80세 이상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600만원, 2031년 1억 5,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억 8,600만원(연평균 1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생계지원금 배우자 승계	86	99	115	133	153	586	11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10(생계지원금)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의10(생계지원금)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내 발병)의 80세 이상 배우자 인원에 생계지원금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월남전 참전)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2026.3.17. 시행)¹⁾에 따라 생계지원금 수급권을 승계함
 - 다만,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후 질병을 얻은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아니어서 그 배우자가 생계지원금 수급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내 발병)의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본 추계에서 생계지원금 수권배우자 인원은 사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전체 배우자 인원에 국내 발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율(2024년 기준 3%= 926명 / 30,610명), 연도별 80세 이상 배우자 비율(무공수훈자)²⁾, 생계곤란자 비율(17.51%)³⁾ 등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 부칙 제2조⁴⁾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배우자 인원과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 발생하는 배우자 인원을 합산하여 추정함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6.3.17.]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무공수훈자 80세 이상 배우자 비율 추정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무공수훈자 80세 이상 배우자	전체 배우자 인원	2,041	2,254	2,544	2,789	3,008	3,314	10.18%
	80세 이상 인원	321	413	548	686	856	1,094	27.79%
	비율	15.73%	18.32%	21.54%	24.60%	28.46%	33.00%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무공수훈자 80세 이상 배우자 추정	전체 배우자 인원	3,652	4,023	4,433	4,885	5,382	5,930	10.18%
	80세 이상 인원	1,398	1,786	2,283	2,917	3,728	4,763	27.79%
	비율	38.28%	44.40%	51.49%	59.72%	69.26%	80.33%	-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3) 80세 이상 여성 생계곤란자 추정

(단위: 명)

- 소급적용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국가보훈부 추정 사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인원(2023년 기준 20,425명)에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2023년 기준 8.06%)⁵⁾을 적용한 후, 국내 발병 비율(3%), 연도별 80세 이상 비율, 생계곤란자 비율(17.51%)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함

[표 2] 소급적용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2023~2031년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	사망률
전체 배우자 인원		20,425	18,779	17,266	15,875	—	8.06%
소급적용 수권배우자	국내 발병	—	—	—	—	—	—
	80세 이상 비율	—	—	—	—	—	—
	생계곤란자 비율	—	—	—	—	—	—
	대상 인원	—	—	—	—	—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사망률
전체 배우자 인원		14,596	13,420	12,339	11,344	10,430	8.06%
소급적용 수권배우자	국내 발병	3%	3%	3%	3%	3%	—
	80세 이상 비율	44.40%	51.49%	59.72%	69.26%	80.33%	—
	생계곤란자 비율	17.51%	17.51%	17.51%	17.51%	17.51%	—
	대상 인원	34	36	39	41	44	—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국가보훈부 추정 연도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인원,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2023년 기준 8.06%), 국내 발병 비율(3%), 배우자 비율(2023년 기준 72.05%)⁶⁾, 연도별 80세 이상 비율, 생계곤란자 비율(17.51%)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기초수급자 (80세 이상 여성)	여성 인구수	1,267,931	1,343,569	1,429,268	1,502,435	1,556,198	248,529
	여성기초수급자	180,910	226,592	256,821	279,146	299,174	1,419,880
	비율	14.27%	16.86%	17.97%	18.58%	19.22%	17.51%

주: 기초수급자 통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생계), 40%(의료), 48%(주거), 50%(교육) 이하에 해당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하 생략>
- 5)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 2020~2023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등록인원	31,907	32,465	31,735	30,732
	사망인원	1,631	1,745	2,463	2,557
	사망률(%)	—	5.47	7.59	8.06

자료: 국가보훈부

- 6)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 2020~2023년

(단위: 명)

[표 3]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2023~2031년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	증가율
사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804	3,035	3,286	—	8.26%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배우자 사망률	—	8.06%	8.06%	8.06%	—	—
	국내 발병	—	3%	3%	3%	—	—
	배우자 비율	—	69.51%	67.05%	64.67%	—	—
	80세 이상 비율	—	28.46%	33.00%	38.28%	—	—
	생계곤란자 비율	—	17.51%	17.51%	17.51%	—	—
	신규발생	—	3	4	4	—	—
	누계인원	—	3	6	10	—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증가율
사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557	3,851	4,169	4,513	4,886	8.26%
신규발생 수권배우자	배우자 사망률	8.06%	8.06%	8.06%	8.06%	8.06%	—
	국내 발병	3%	3%	3%	3%	3%	—
	배우자 비율	62.38%	60.18%	58.05%	55.99%	54.01%	—
	80세 이상 비율	44.40%	51.49%	59.72%	69.26%	80.33%	—
	생계곤란자 비율	17.51%	17.51%	17.51%	17.51%	17.51%	—
	신규발생	5	6	8	9	11	—
	누계인원	14	19	25	33	41	—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소급적용 수권배우자와 신규발생 수권배우자를 합산하여 개정안에 따른 수권 배우자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개정안에 따른 수권배우자 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수권배우자	소급적용	34	36	39	41	44
	신규발생(누계)	14	19	25	33	41
	합계	48	55	64	74	85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수권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단가는 2026년 확정 예산에 책정된 단가(15만원)를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구분		2020	2021	2022	2023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	무공수훈자 인원	18,071	16,516	14,830	14,049
	배우자 인원	14,780	12,661	11,345	10,123
	비율(%)	81.79	76.66	76.50	72.05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수급권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수권배우자 추정 인원(인원)에 생계지원금 단가(15만원)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80세 이상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600만원, 2031년 1억 5,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억 8,600만원(연평균 1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생계지원금 배우자 승계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수권배우자 인원(A)		48	55	64	74	85	—
생계지원금	월지급액(B, 천원)	150	150	150	150	150	—
	개월수(C, 개월)	12	12	12	12	12	—
	추가재정소요 (D=A×B×C)	86	99	115	133	153	586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사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무공수훈자 배우자 비율과 그 배우자 사망률, 국민기초일반수급자 등의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비율, 수당단가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